# 한라대학교 헌장

제정 : 1990. 3.31.

2차 개정 : 2013. 8.21.

# 한라대학교의 사명과 비전(前文)

한라대학교는 지식기반사회의 첨단이론과 실용학문을 연마하는 학술공동체로서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인재 양성을 실천하는 도장이다. 이 에 한라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교육정신을 밝힌다.

첫째, 미래지향적인 교육기관이다.

인간과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열린 마음을 가진 새 시대의 창의 인재를 양성함 으로써 미래사회를 선도한다.

둘째, 창조적인 교육기관이다.

창의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의 학문영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학문영역을 개척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를 선도 한다.

셋째, 실천하는 교육기관이다.

건학이념을 토대로 미개척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실험정신을 발휘하여 지역 과 민족 그리고 인류발전을 추구하는 참된 교육을 실천한다.

이상을 바탕으로 한라대학교는 공동체 문화를 존중하는 성숙한 인격과 책임의식을 함양한 창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연구·봉사·산학협력으로 대학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살아 숨쉬는 한라대학교의 전통과 색깔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한라대학교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대학이 추구할 목표와 의지를 나타내는 실천규범으로, 교육수요자가 기대하는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공개하고 제반 학사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건학이념) 한라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건학이념은 인·의·예·지에 바탕을 둔 전인교육으로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지도자를 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제3조 (삭제 2013.8.21.)

- 제4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창조적 자아실현"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구축"하고 "인류공영에 공헌"함을 교육목적으로 삼는다.
  - ② 본 대학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인재상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여 꿈을 실현하는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 ③ 본 대학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각 종의 제 규정을 이에 일치시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④ 본 대학의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를 기본으로 하여 학과(부)별 전공별 교육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포함한 제반 교육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한다.

# 제2장 교육 과정

- 제5조(특성화 정책) 본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현장 적응능력이 우수 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교육체계의 정보화를 통해서 대학 본래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성화정책을 표방한다.
  - 1. 실용학문 중심대학 인성교육을 위한 책임지도교수제를 실시하고, 다학문 복합교육과 함께 실험·실습교육 을 강화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이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를 갖춘다.
  - 2.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기업체 및 산하 연구소, 국가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소와 연계하여 첨단기 술에 대한 연구개발업무를 활성화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선도하여 이상적인 산·학·연 체제의 모형을 구축한다.
  - 3. 교육의 정보화 지식이 경제의 기반이 되는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교육체계를 정보화하고 전 구성원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한다.
- **제6조(학과/학부의 발전방안)** ① 본 대학의 특성화와 학과(부) 교육목표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 학과(부)별로 발전방안을 수립한다.
  - ② 학과(부)별로 수립된 발전방안은 대학의 특성화 추진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
  - ③ 미래지향적 학문을 선도하기 위하여 신학문 분야를 적극 개설하며, 이로부터 소외될 수 있는 기초학문을 지원하고 참 봉사를 실천한다.
- 제7조(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① 교육과정 전반을 연구·심의하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② 교육과정은 교양과정과 전공과정의 연구 및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편보완한다.
  - ③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여 운영한다.
  - 1. 학문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창의적 능력 함양
  - 2. 실험·실습·실기교육을 강화하여 현장적응 능력을 함양
  - 3.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사고와 폭넓은 소양을 함양
  - ④ 산·학·연 협력연구체제를 구축한다.
  - ⑤ 교양과정은 일반 교양교육과 전공에 대한 입문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구성하며, 학문 관심 영역별로 세분화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세계화 및 정보화에 발맞추어 외국어 및 컴퓨터 교육을 강화한다.

# 제3장 교육 여건

- **제8조(교원 확보)** ① 본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에 맞추어 대학의 본질적 기능이 충분 히 구현될 수 있는 학문적으로 우수한 전임교원을 확보한다.
  - ②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교원임용제도를 활용한다.
- 제9조(시설·설비 확보) ①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교육기본시설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한다.
  - ② 교육과 연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구기자재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 ③ 학생의 학습능률을 높이고, 교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시설을 확충한다.

# 제4장 학사 관리

- 제10조(학생 선발) ① 본 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입시방안을 연구하여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한다.
  - ② 입시의 신뢰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시공정위원회를 둔다.
- 제11조(학생정원관리) 본 대학의 특성화 정책과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원 내에서 학과(부)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한다.
- 제12조(학기) 연간 2학기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한다.
- 제13조(학술교류)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학술교류를 확대한다.
- **제14조(학사행정서비스)** ① 학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체제를 강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학사행정서비스 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 제5장 대학 운영

#### 제1절 인사 관리

- 제15조(교직원 채용기준) ① 대학 및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가진 자 중에서 학문영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업적을 쌓고 실용교육과 적합한 인재를 본교의 교원으로 임용한다.
  - ② 직원은 업무수행에 전문성을 갖추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대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한다.
- 제16조(교직원 채용절차) 교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절차는 관련 인사 규정에 정한다.
- 제17조(교원업적평가) 교원업적평가의 영역은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으로 구성되며, 교원업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재임용 및 승진, 정년보장심사에 반영한다.
- 제18조(교원 능력향상) ① 교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실현한다.
  - 1. 연구지원체제를 구축한다.
  - 2. 국내외 학술활동을 지원하여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문분야의 학술대회를 유치함으로써 학문교류를 활성화한다.

- 3. 연구년제의 실시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한다.
- 제19조(직원 능력향상)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 제2절 재정

- 제20조(재정확보방안) 대학의 건실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한다.
  - 1. 등록금은 교육원가수준, 교육과정의 질과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수익 자부담 원칙을 적용한다.
  - 2.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하여 수입의 다변화를 기하고 전입금 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한다.
  - 3. 다양한 기부금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한다.
  - 4. 국고 보조금 및 산·학·연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기타 수입을 확충한다.
- 제21조(재정의 공개) 재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유지를 위해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한다.
- 제22조(재정운영의 공정성) ① 재정운영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 ② 재정운영에 있어서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제23조(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계획 및 관리) ① 법인은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수익용 재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 ② 법인은 수익용 재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관리한다.

# 제6장 후생 복지

- 제24조(학생장학금) ① 장학생의 선발과 기준은 장학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관리한다.
  - ② 장학기금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 ③ 외부 장학금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25조(학생자치기구) ① 공식적인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 ② 학생들의 자율 학술활동을 장려한다.
- **제26조(학생복지)** 본 대학은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다양한 대학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한다.
- 제27조(학생상담) 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안내를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며, 학생생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개선해 나간다.
- 제28조(교직원 복지) ① 본 대학은 교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 경을 조성해 나간다.
  - ② 교직원 상호간에 친목과 복리증진이 이루어지도록 복지향상을 추진해 나간다.

#### 제7장 장·단기 발전계획

- 제29조 (장·단기발전계획) ① 본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및 특성화를 구현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 및 전략을 수집하여 추진한다.
  - ② 장·단기 발전계획은 본 대학의 발전 목표와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교육개혁, 교원의 발전, 행정개혁,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재정확보 및 운영 등 부문별 세부 계획

을 수립한다.

- ③ 장·단기발전계획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
- ④ 장·단기발전계획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제8장 보칙

제30조(대학헌장의 보완) 학교발전에 따라 대학헌장을 보완하고자 할 때는 학교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누가 기록한다. 제31조(공표일) 이 헌장은 2001년 3월 1일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헌장은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헌장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